

2023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10차 중능분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23. 10. 17. (화요일), 14:00 ~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홍승재(위원장), 김문식, 남효대, 소현수, 배응규,
이훈, 장호수, 조재모, 홍석주, 홍보식, 혜도(이상 11명)
- ▣ 출석전문위원 : 장명근(1명)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1 비공개(군사시설 관련)
- 2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
- 3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둘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(허가변경)
- 4 (사적)광명 영회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- 5 (사적)고양 서오릉 및 고양 서삼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- 6 (사적)구리 동구릉 및 구리 명빈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- 7 (사적)남양주 광릉 외 4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- 8 고양 서오릉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(허가변경)

【검토사항】

- 1 창경궁 및 서울 선릉과 정릉 역사경관립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한시 설치

【보고사항】

- 1 사직단 사직대문 보수정비
- 2 사직단 안향청권역 복원공사
- 3 창덕궁 돈화문 보수공사
- 4 경복궁 「광화문 월대복원 기념행사」 장소 사용
-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궁능 2023-10-01

1. 비공개(군사시설 관련)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2

2.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.
 - '21년 사적분과 소위원회('21.4.28.),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1.11.16.), '22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2.1.18.) / 부결 :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남양주 영빈묘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-36 외 1필지 (문화재구역에서 157m 이격, 1구역)
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
 - * 설명자료의 건축물 2개동은 부지 조성을 위한 예시자료이며 향후 단독주택 신축 시 문화재위원회 별도 심의 예정

| 구분 | 1차 ('21.4.28./부결) | 2차 ('21.11.16./부결) | 3차 ('22.1.18./부결) | 금회 안 | 비고 |
|---------|--|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지면적 | 2,974㎡ | 1,374㎡ | 1,374㎡(건축부지) 1,729㎡(도로형질변경) 총 3,103㎡ | 1,124㎡(건축부지) 1,432㎡(도로형질변경) 총 2,556㎡ | 대지면적 감소 |
| 건축(연)면적 | 544.80㎡ (961.60㎡) | 247.56㎡ (384.84㎡) | 273.60㎡ (273.60㎡) | 149.5㎡ (149.5㎡) | *주택 향후 별도 심의 |
| 건축규모 | 지상2층, 8동 | 지상2층, 4동, 경사지붕(H:7m), 목구조 | 지상1층, 4동, 경사지붕(H:4.15m), 목구조 | 지상1층, 2동, 경사지붕(H:4.244m), 경량철골구조 | *주택 향후 별도 심의 |
| 부지조성 | 콘크리트 포장 (1,638.5㎡) 보강토옹벽 L:385.7m (H:0.0~4.9m) 역L형옹벽 195.7m (H:0.0~4.5m) 법면조성(500㎡) | 콘크리트 포장 (1,611.5㎡) 보강토옹벽 L:124.3m (H:0.0~3.0m) 역L형옹벽 175.1m (H:0.0~4.9m) 법면조성(131.6㎡) | 콘크리트 포장 (1,611.5㎡) 보강토옹벽 L:124.3m (H:0.0~3.0m) 역L형옹벽 L:175.1m (H:0.0~4.9m) 법면조성(131.6㎡) 성/절토량 2,826㎡/1,116㎡ | 콘크리트 포장(1382.5㎡) 보강토옹벽 L:82.3m (H:0.0~1.0m) 역L형옹벽 L:131.4m (H:0.0~2.0m) 자연석쌓기 L:92m (H:0.0~2.0m) 법면조성(22㎡) 성/절토량 483.3㎡/722.3㎡ | 옹벽 규모 감소, 성/절토량 감소 |

(4) 신청인 의견

- 기존 부결안에 비해 규모 등을 줄여 재신청하는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심의 부탁드립니다.

라. 참고사항

(1) 현지조사 의견('21.4.19./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
- 신청지는 남양주 영빈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70m 정도 떨어져 있는 1구역에 해당함
- 남향하고 있는 영빈묘에서 전면에 조망되는 위치로 지형·지맥의 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,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

(2) 현지조사 의견('21.9.2./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
- 남양주 영빈묘로부터 157m 이격되어 있는 단독주택 신축에 대한 것으로, 이전 부결안에 비해 사업대상지를 축소하고 절성토의 양을 줄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한 의도가 보임
- 다만, 문화재로부터 근접해있으며 지대가 높아 문화재로부터 외부조망에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

(3) 현지조사 의견('23.09.11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)

- '21.4.28.부터 3회 부결되고 금회 수정안을 올린 사안이며 기존안에서 도로를 변경하고 축대를 낮추고 건축규모를 축소하였음
- 도로변 자연석 쌓기 후면 사면은 조경녹지로 처리할 것(옹벽단차 해소요소)
- 영빈묘에서 대상지, 대상지에서 영빈묘를 바라보는 사진 촬영하여 제시할 것
- 문화재(영빈묘)에서 가시되지 않아 문화재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마. 의결사항

- 보류
 - 해당 부지의 허용기준 재조정에 관한 주민 건의와 남양주시의 검토절차가 진행중이고 동절기 경관의 변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완, 확인하여 재심의토록 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보류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03

3. 남양주 흥릉과 유릉 내 돌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(허가 변경)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흥릉과 유릉」 내 돌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행위허가(변경)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기 허가된 남양주 흥릉과 유릉 내 돌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의 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
-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(2020. 5. 14.) 심의 : 조건부가결(기존 시설부지 내에서 정비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남양주시장
- (2) 대상문화재명 : 남양주 흥릉과 유릉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352-1(금곡동 141-1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-6(문화재구역)
 - 사업내용 : 돌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(허가사항 변경)

| 구분 | 1차 ('20.5.14./조건부가결) | 변경(안) | 비고 |
|----|---|---|----|
| 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면적: 190㎡ - 워터 조성 1식 - 워터 테크 1식 - 에어건 1개소 - 개수대 1개소 - 돌수로 1개소 - 파고라 2개소 - 전시벽 1개소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난간(H:1.2m×L18m) 신규 설치 - 배수로 신설 및 교체 (흡관 D800mm×L16m) - 물탱크(1m×0.8m, 지하수 저장용), 1개 설치 - 음수대(0.38m×0.38m×1m) 1개 설치 - 잔디(평폐) 포장 200㎡ - 기존 화강석경계석 7.6m →48.6m 확장 - 기존 자연석판석 및 흑콘크리트 포장 → 점토블럭 포장(200×200×T60mm) 30㎡ 변경 - 기존 용머리개수대 1개소 이설 - 기존 파고라 → 벽체형파고라 변경 - 기존 자연석판석 포장(6㎡→26.1㎡) 확장 | |

(4) 신청인 의견 : 해당없음

라. 검토의견(동부지구관리소(홍릉·유릉 관리소))

- 남양주시 계획상의 노후·훼손된 흙관을 폐쇄하고 흙관 및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피해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, 공사로 인하여 주변 벽면 토사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
- 둘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에 신규 또는 변경으로 설치되는 소재와 색상을 사적지 경관에 어울리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마. 의결사항

- 보류
 - 금번 변경허가 신청사항 중 현황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를 확인한 후 재심의토록 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보류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4

4. 광명 영회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광명시 소재 사적 「광명 영회원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광명 영회원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경기도 광명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광명 영회원(사적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주요내용

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- 조정사항

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- 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
-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0-131호, 2010. 12. 22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보존구역 | | |
| 2구역 | ○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공통사항 | 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| | |

○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,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·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. ○ 제1구역에서 「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」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 허가 신청 건은 광명시와 협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| | |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.

라. 검토의견

- 금회 광명시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~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(1,2차)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
- 주요 조정사항은 문화재별 기 마련된 허용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추가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022년 일부 개정된 「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」에 부합되도록 단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광명시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 가결
 -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조건부 가결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5

**5. 고양 서오릉 및 고양 서삼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**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고양 서오릉, 고양 서삼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고양 서오릉, 고양 서삼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경기도 고양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고양 서오릉(사적), 고양 서삼릉(사적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- 주요내용
 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 - 조정사항
 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 - 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
○ 고양 서오릉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45호, 2017. 12. 4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2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| |
| 3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| |
| 4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| |
| 5구역 | ○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○ 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한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^2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. (단,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.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고양 서오릉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최고높이 5m이하 | ○ 최고높이 7.5m이하 | |
| 3구역 | ○ 최고높이 8m이하 | ○ 최고높이 12m이하 | |
| 4구역 | ○ 최고높이 11m이하 | ○ 최고높이 15m이하 | |
| 5구역 | ○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 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 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. ○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^2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.(단,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교사목·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m^2 이상의 식재는 개별검토함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고양 서삼릉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45호, 2017. 12. 4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2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| |
| 3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| |
| 4구역 | ○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5구역 | ○ 경기도 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(문화재자료 제79호)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○ 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^m2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. (단,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.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고양 서삼릉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최고높이 5m이하 | ○ 최고높이 7.5m이하 | |
| 3구역 | ○ 최고높이 8m이하 | ○ 최고높이 12m이하 | |
| 4구역 | ○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5구역 | ○ 경기도 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(문화재자료 제79호)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 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 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. ○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^m2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.(단,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·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^m2 이상의 식재는 개별검토함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.

라. 검토의견

- 금회 고양시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~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(1,2차)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
- 주요 조정사항은 문화재별 기 마련된 허용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추가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022년 일부 개정된 「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」에 부합되도록 단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고양시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 가결
 -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조건부 가결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6

6. 구리 동구릉 및 구리 명빈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「구리 동구릉, 구리 명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구리 동구릉, 구리 명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구리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구리 동구릉(사적), 구리 명빈묘(사적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- 주요내용
 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 - 보물 3개소 포함 통합 고시(구리 동구릉)
(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/ 송릉 정자각 / 목릉 정자각)
 - 조정사항
 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'허용기준 공통사항'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 - 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
○ 구리 동구릉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68호, 2017. 5. 8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2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| |
| 4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| |
| 5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| | |
| 6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45m 이하 | | |
| 7구역 | ○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단, 건축물 최고높이 54m초과 시 건축물 신축은 별도 심의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구리 동구릉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최고높이 11m 이하 | ○ 최고높이 15m 이하 | |
| 4구역 | ○ 최고높이 14m 이하 | ○ 최고높이 18m 이하 | |
| 5구역 | ○ 최고높이 29m 이하 | | |
| 6구역 | ○ 최고높이 45m 이하 | | |
| 7구역 | ○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, 최고높이 54m초과 시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은 별도 검토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m²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구리 명빈묘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68호, 2017. 5. 8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2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3구역 | ○ 서울시,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구리 명빈묘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3구역 | ○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.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.

라. 검토의견

- 금회 구리시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~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(1,2차)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

- 주요 조정사항은 문화재별 기 마련된 허용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추가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022년 일부 개정된 「국가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」에 부합되도록 단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구리시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 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 가결
 -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조건부 가결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7

7. 남양주 광릉 외 4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광릉, 남양주 홍릉과 유릉, 남양주 사릉, 남양주 순강원, 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남양주 광릉, 남양주 홍릉과 유릉, 남양주 사릉, 남양주 순강원, 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남양주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남양주 광릉(사적), 남양주 휘경원(사적), 남양주 홍릉과 유릉(사적), 남양주 사릉(사적), 남양주 광해군묘(사적), 남양주 성묘(사적), 남양주 안빈묘(사적), 남양주 순강원(사적), 남양주 영빈묘(사적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- 주요내용
 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 - 조정사항
 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'허용기준 공통사항'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 - 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 - * 소음·진동 유발 및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열 방출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표기 추가

○ 남양주 광릉, 남양주 휘경원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1호, 2017.1.19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2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)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4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| |
| 5구역 | ○ 남양주시,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남양주 광릉, 남양주 휘경원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최고높이 5m 이하 (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) | ○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4구역 | ○ 최고높이 11m 이하 | ○ 최고높이 15m 이하 | |
| 5구역 | ○ 남양주시,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남양주 흥릉과 유릉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45호, 2017.12.4.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2구역 | ○ 신축불가 | | |
| 3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| | |
| 4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| | |
| 5구역 | 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(단, 건축물 최고높이 32m 초과시 개별심의)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(보호)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남양주 흥릉과 유릉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신축불가 | | |
| 3구역 | ○ 최고높이 17m 이하 | | |
| 4구역 | ○ 최고높이 23m 이하 | | |
| 5구역 | 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(단, 최고높이 32m 초과시 개별 검토)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남양주 사릉, 남양주 광해군묘, 남양주 성묘, 남양주 안빈묘 현행
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1호, 2017.1.19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2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4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| |
| 5구역 | 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남양주 사릉, 남양주 광해군묘, 남양주 성묘, 남양주 안빈묘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4구역 | ○ 최고높이 11m 이하 | ○ 최고높이 15m 이하 | |
| 5구역 | 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(단,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)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남양주 순강원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1호, 2017.1.19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2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4구역 | 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남양주 순강원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4구역 | 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남양주 영빈묘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1호, 2017.1.19.)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심의 | | |
| 2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4구역 | 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○ 남양주 영빈묘 조정안

| 구분 | 현상변경 허용기준 |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 |
| 2구역 | ○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최고높이 7.5m 이하 | |
| 3구역 | ○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 이하 | |
| 4구역 | 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| | 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 |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서 별도 붙임.

라. 검토의견

- 금회 남양주시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~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(1,2차)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
- 주요 조정사항은 문화재별 기 마련된 허용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추가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022년 일부 개정된 「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」에 부합되도록 단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남양주시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라. 의결사항

- 조건부 가결
 -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조건부 가결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8

8. 고양 서오릉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(허가변경)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「고양 서오릉」(사적)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고양 서오릉 주변에 야영장 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 - '20년 사적분과 9차 소위원회('20.11.25.) 부결 :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 - '21년 공능분과 4차 위원회('21.08.17.) 부결 :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 - '22년 공능분과 2차 위원회('22.03.15.) 조건부가결
 - : 식재 및 보행자 동선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(22.5.16. ○○○ 위원 검토 완료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고양 서오릉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-92
- (3) 신청내용<야영장 시설 신축>
 -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-458(문화재구역에서 140m 이격)
 - 허용기준 1구역(개별심의)
 - 사업내용 : 건물 1동 신축, 야영장 시설 신축(허가변경)

| 구분 | 1차('20.11.25./부결) | 2차('21.08.17./부결) | 3차('22.03.15./조건부가결) | 금회(안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지면적 | 2,670㎡ | 좌동 | 좌동 | 좌동 | |
| 건축(연)면적 | 145.73㎡ (177.08㎡) | 154.86㎡ (154.86㎡) | 98.4㎡ (98.4㎡) | 107.91㎡ (172.31㎡) | +9.51㎡ +73.91㎡ |
| 건물높이 | 8.5m(평지붕) | 5.0m(경사지붕) | 5.5m(경사지붕) | 8.0m(경사지붕) | +2.5m |
| 건축규모 | 지상2층, 1동, 철골조 | 지상1층, 1동, 철골조 | 지상1층, 1동, 철골조 | 지상2층, 1동, 철골조 | +지상1층 |
| 부지조성 | 최대 절토높이 약5m | 최대 절토높이 약3.5m 콘크리트포장 (T=200mm) : 546㎡ | 최대 절토: 약3.2m 절토량: 160㎡ 콘크리트포장 (T=200mm):546㎡ 콘크리트옹벽 (H=0.2~3m):68.3m | 최대절토:약3.2m 절토량: 237.12㎡ 콘크리트포장 (T=200mm):268㎡ 콘크리트옹벽 0m | 포장 - 278㎡, 옹벽 -68.3m |
| 야영장 부지 | 부지면적: 798.92㎡ | 부지면적:좌동 데크(5×3m) 11개소 설치 수목 82주 벌채 | 부지면적:1,340㎡ 수목 식재: 188본 ※ 수목식재 1,298주로 조건부 검토 변경됨 | 부지면적:좌동 수목식재: 1298주 | - |

(4) 신청인 의견

- 문화재 경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절·성토를 최소화하여 현 지반을 이용하여 조성할 계획임

라. 참고사항

(1) 현지조사 의견('21.7.5./문화재위원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
- 해당 부지는 가파른 임야지형으로, 앞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다량의 절토와 벌목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 해당 부지의 현황도면과 계획도면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상세 계획도면의 보완이 필요함.(※8.9.자 보완서류 제출)
- 현재의 도면에서는 야영장 시설에 대한 이용자 동선의 고려가 없음.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보행로를 계획하고 있지 아니한데, 장차 이용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. 차후 보행로의 설치 가능성이 있음

마. 의결사항

- 보류
 - 설계도면 등 자료 보완 후 재심의토록 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보류 11명

【 검토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9

1. 역사경관립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한시 설치(창경궁, 선릉)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강남구 소재 사적 「창경궁」 과 「선릉」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임시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사적 창경궁 및 선릉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임시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국립산림과학원
- (2) 대상문화재명 : 창경궁(사적), 서울 선릉과 정릉(사적)
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/ 서울 강남구 선릉로100길 1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/ 서울 강남구 선릉로100길 1
 - 창경궁 및 서울 선릉과 정릉 문화재구역 내
 - 사업내용 : 창경궁 및 선릉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한시적 설치(~27.12.31.까지)
 - 점유공간 : 50m²
 - 터파기 물량 : 3.2m³
 - 관측 타워 자체 재원 : 0.7m(가로)*0.7m(세로)*19.5m(높이)
- (4) 신청인 의견
 - 문화재청-산림청 업무협약(2023.3.15.) 이행을 위한 제안과제 수행
 - * 문화재청 제안(㉔)공능 및 종묘, 조선왕릉의 기후변화 등 연구, 공능유적본부)
 - 역사경관립의 이산화탄소 흡수(대기-식생-토양) 평가
 - * 도심(용산)과 비교한 역사경관립의 온실가스 흡수를 실시간 표출 추진 (산림미세먼지 측정넷 플랫폼 활용: aican.nifos.go.kr)

라. 참고사항

(1) 현지조사 ('23.10.11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)

- 극심한 기상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현상과 피해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경제·사회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
- 최근 “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”을 수립하여 궁능 역사경관립 내 온실가스 흡수 측정 방법론을 개발, 궁능숲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한 바 있음
- 이에 역사경관립의 가치와 기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관측타워 설치의 필요하나, 수립대 위로 노출되는 부분은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.

(2) 검토의견(복원정비과)

-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신청한 ‘궁능 역사경관립 내 온실가스 관측타워 한시 설치’는 2023년 3월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업무협약 협력사업 추진과제 중의 하나이며 문화재청의 「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」(2023.7.)에 담긴 내용임.
- 관측 타워 구조물이 높기는 하지만 수목이 우거진 역사경관립 내에 설치되어 관람로에서는 시각적으로 도드라지지 않아 역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구조물의 색상은 기존 종합경비 시스템(CCTV)의 색상인 짙은 고동색으로 맞추어 주변과 조화롭게 하고, 관람로에 안내 문안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함.

(3) 검토의견(창경궁관리소)

- ‘궁능 역사경관립 내 온실가스 관측타워 한시 설치’는 기후변화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공동 사업으로 지속적 관리·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- 설치의 규모와 장소를 감안할 때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함
- 아울러 창경궁관리소 소관 국유지 내 온실가스 관측타워 설치를 신청한 사항으로 창경궁 내 관측타워를 설치하기 위한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호 간의 행정적 협의가 필요할 것임

(4) 검토의견(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)

-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및 기후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<온실가스 관측타워 설치 사업>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됨

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 가결
 - 무채색 계열의 색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롭게하여 설치할 것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조건부 가결 11명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10

1. 사직단 대문 보수정비

가. 보고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보물 「사직단 대문」 의 보수정비 계획을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사직단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보물 「사직단 대문」 을 고증자료에 따라 보수코자 합니다.

※ 사직단 복원정비 사업 개요

Table with 5 columns: 사업연도, 단기 (2015~2018), 중기(1차) (2018~2021), 중기(2차) (2022~2025), 중기(3차) (2026~2027). Row 2: 사업내용, including restoration of original form, site restoration, and conservation of the main gate.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직단 대문(보물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-38번지
- 문화재 현황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조성을 위해 1962년(14m)과 1973년(10m) 두 차례에 걸쳐 위치가 이동됨
- (3) 신청내용
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-38번지
- 사업내용

Table with 3 columns: 구분, 현황, 보수(변경) 내용. Rows describe restoration of gate shape, roof structure, and veranda levels.

(4) 신청인 의견

- 기존 사직단 대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조성을 위해 1962년 14m, 1973년 10m 두 차례 위치가 이동되며 그 형태가 크게 바뀌었음
- 이에, 사직단 대문에 대한 사직단국왕친향도병(1984~36) 및 유리건판 사진(1910년대)를 토대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‘사직단 복원정비 계획(2014)’에 따른 보수복원을 하고자 함

라. 참고사항

(1) 사전협의체 의견('23. 10. 6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위원)

- 기와골과 규격은 현황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, 유리건판의 사진을 보면 내림마루 곡이 있는 형태이므로 보수 시 반영
- 판문의 X자 가새는 좌우칸 대칭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

마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접수 11명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11

2. 사직단 안향청권역 복원사업

가. 보고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「사직단」의 안향청 권역 복원계획을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일제강점기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‘사적 사직단’의 제례동선 회복 등을 위하여 ‘사직단 복원정비 계획(2014)’에 따라 안향청권역을 복원하고자 합니다.

※ 사직단 복원정비 사업 개요

| 사업 연도 | 단기 | 중기(1차) | 중기(2차) | 중기(3차)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2015~2018 | 2018~2021 | 2022~2025 | 2026~2027 |
| 사업 내용 | · 화계 및 외곽담장정비 · 부대시설 정비 · 관리사무소 건립 | · 원지형 복원 · 전사청권역 복원 | · 안향청권역 복원 · 사직대문 보수정비 | · 신실보수 · 단유, 어도 정비 · 안내판 및 편의시설 정비 |

※ 사업실적 및 계획(사직단 안향청권역 복원사업)

| 사업연도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주요내용 | 지형복원, 발굴조사 | 복원설계, 발굴조사 | 복원공사(1차) | 복원공사(2차) | 복원공사(3차) |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직단(사적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-38번지
 - 문화재 현황
 - 안향청: 1988년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어 존치됨
 - 그 외 건물 훼손되어 어린이수영장,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이 건립되었으며 최근 발굴조사를 완료한 상태임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-38번지
 - 사업내용: 안향청권역 건조물복원 및 지형정비

| 건물명 | 구분 | 사업내용 |
|------|------|---|
| 안향청 | 보수 | · 전체(초석 포함) 해체 및 재설치 · 건물규모(정면4칸, 측면2칸) 변동없음 · 변형된 평면구조 복원정비(온돌방, 굴뚝설치 및 창호변경 등) · 노후된 부재 교체보수(기둥교체 등 8개소) |
| 동집사청 | 일부복원 | · 도로(인도)와 간섭이 있어 기단까지 복원 |
| 서집사청 | 복원 | · 규모: 정면 4칸, 측면 1칸(온돌방-온돌방-대청-온돌방) · 구조: 동향, 3량, 맞배지붕 / 벽체: 토벽 / 단청: 가칠 |
| 중문채 | 복원 | · 규모: 정면 10칸, 측면 1칸(좌측4칸-중문1칸-우측5칸) · 구조: 남향, 3량, 맞배지붕 / 벽체: 토벽 / 단청: 가칠 |
| 약기고 | 복원 | · 규모: 정면 4칸, 측면 1칸 · 구조: 동향, 3량, 맞배지붕 / 벽체: 토벽 / 단청: 가칠 |
| 차장고 | 복원 | · 규모: 정면 3칸, 측면 2칸 · 구조: 남향, 3량, 맞배지붕 / 벽체: 토벽 / 단청: 가칠 |

(4) 신청인 의견

- 조선왕실의 가장 큰 국가의례 시설인 사직단은 1920년대 시작된 공원화 계획에 의해 크게 변형된 채로 존치되어왔음.
- 사직공원 및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오며 대부분의 본래 시설이 훼손된 안향청권역은 사직대제 동선 회복을 위해 중요한 공간임
- 이에, ‘사직단 복원정비 계획(2014)’ 및 ‘사직단 안향청권역 발굴조사(2022~2023) 결과’를 토대로 안향청권역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,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

라. 참고사항

- (1) 사전협의체 의견('23. 10. 6. /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위원)
 - 경사가 심한 지역이므로 우수처리를 위한 홈관 규격을 늘리는 등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계획토록하며, 원지형복원은 주변지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공사과정에서 자문을 통해 정비토록 함
 - 건물 명칭이 문헌 상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복원 건물의 명칭에 대한 검토 필요
 - 안향청 전면 반송 식재여부 검토토록 함
 - 인도로 인해 복원 불가능한 동집사청과 중문채 일부는 공간적 성격을 느낄 수 있도록 정비함

마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접수 11명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12

3. 창덕궁 돈화문 보수 공사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보물 「창덕궁 돈화문」의 보수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보물 창덕궁 돈화문 노후에 따른 구조적 문제 발생에 따라 관람객 안전 확보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함
- 추진경과
 - ('14년) 문화재 특별점검 :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, 정밀안전진단 필요
 - ('15년) 정밀구조안전진단 : E등급(보수정비)
 - ('15년~'17년) 창덕궁 돈화문 모니터링 실시(現국립문화재연구원)
 - ('17년~'18년) 창덕궁 돈화문 보수 설계(용역비: 224,534천원)
 -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: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보수시점 결정(조건부가결)
 - ('18년~'22년) 국립문화재연구원 중점 관리 문화재 모니터링 실시
 -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상층 지붕부 해체수리 등 조속 조치 필요

| 연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등급 | C (주의관찰) | C (주의관찰) | E (수리) | E (수리) | E (수리) |

* 등급기준 : A 양호 / B 경미보수 / C 주의관찰 / D 정밀진단 / E 수리 / F 즉시조치

- ('23년) '22년 결과 바탕으로 보완설계, 보수공사 범위 확정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
- (2) 대상문화재명 : 창덕궁 돈화문(보물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99(와룡동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99(와룡동)
 - 사업내용 : 하층 연목이상 해체보수, 상층 도리이상 해체보수 공사

(4) 신청인 의견

- '17년 돈화문 보수공사 설계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해체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고증사진 등의 과학적 분석과 추가 자료 조사 및 지속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돈화문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함

라. 참고사항

(1) 자문의견('23.7.18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전문위원 ○○○)

- 돈화문은 연목 해체 후 도리, 대량, 추녀 등의 교체 및 보강여부를 결정토록 하며, 좌우측 협칸의 부러진 대량 2본은 보수공사 시 보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함.
- 다른 궁궐 정문과는 다른 돈화문의 건축적 가치, 세부적 기법 등에 대해 조사하고, 보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여 보수 방향을 정하도록 함.
- 공포부재의 이완, 균열 등에 대한 변형 현황 추가 조사토록 함.
- 돈화문 치미, 1층 협칸 좌우 벽체 등이 현황과 조선고적도보 사진과 상이하므로, 추후 돈화문 수리 시 복원 여부 검토를 위한 자료를 추가조사토록 함.
- 현재 상층 우주와 고주를 연결하고 있는 와이어 보강방법의 구조적 효용성에 대해 조사하고, 향후 와이어 제거 시 구조적 보강방안에 대해 강구토록 함.
- 단청에 대한 조사 및 보수 계획을 설계에 반영토록 함.

(2) 자문의견('23.9.20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 전문위원 ○○○)

- 돈화문의 측면 벽체는 화방벽으로 설치하고 화방벽의 하부는 장대석으로 낮게 10cm내외로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
- 협칸과 틈칸사이의 판벽은 사진 추가 조사 및 현장의 장부구멍, 흔적 추가 조사 후 설계에 반영할 것
- 추녀마루 양성바름의 높이는 사진과 같이 고증자료를 통해 진행하되, 추녀의 현수곡선이 잘 살아있도록 장연과 단연의 물매는 다시 재검토 하여 설정할 것
- 잡상의 개수는(현재 7개) 궁궐 사이의 위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함
- 대량과 추녀 등의 보강은 최대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되, 구조 자문을 받도록 함

(3) 자문의견('23.10.6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문화재수리기술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돈화문 보수공사(1976년, 1997년)시 교체된 부재, 기와 등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설계에 반영토록 함.
- 창경궁 홍화문, 덕수궁 대한문 등 궁궐 정문의 용마루 양식, 잡상의 개수 변화, 협칸의 벽체 설치 유무 등에 대해 비교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.
- 해체 후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재 등에 대해서 특기시방서에 명기토록 함.

마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접수 11명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13

4. 경복궁 「광화문 월대복원 기념행사」 장소 사용

가. 제안사항

“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”를 추진하고자 경복궁 광화문 앞 월대 장소사용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합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여 경복궁 월대 복원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복원정비과
- (2) 대상문화재명 : 경복궁(사적) 광화문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
 - * 광화문 앞 월대복원공사 2023년 11월 완료 예정
- (3) 신청내용
 - 장소 : 경복궁 광화문 앞 광장 및 경복궁(광화문~근정전)
 - 사업명 :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
 - 행사일시: 2023.10.15.(일) 17:00~20:00
 - * 설치: 2023.10.13.(금) 09:00 ~ 22:00 (리허설 : 2023.10.14.(토))
 - * 철거: 2023.10.15.(일) 22:00 ~ 24:00
 - * 행사 무대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
 - 운영 프로그램

| 구분 | 시 간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0. 15.(일) <기념식> | 09:00~14:00 | 리허설 | |
| | 14:00~17:30 | 공연 준비 | |
| | 17:00~18:00 | 식전 공연 | |
| | 18:00~20:00 | 기념식 및 야간관람 | |
| | 22:00~24:00 | 정리 | 조명 및 음향기구 철거 |
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(1) 검토의견(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)

- “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”를 추진하고자 장소 사용을 신청한 경우로 주 행사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며 월대 위에는 이동식 조명장치만 설치되어 행사로 인해 경복궁 월대 훼손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

마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접수 11명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14

5.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가. 보고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구리 동구릉」 주변 지하수 굴착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내용

| 문 화 재 | 소재지 | 신청인 | 사 업 내 용 | 처리결과 | 처리일자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|------|------------|
| (사적) 구리 동구릉 | 경기도 구리시 | ○○○ | <생활용수 사용 위한 지하수 굴착> ○ 위치 :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0-104 (5구역/ 문화재 구역과 190m 이격) ○ 사업내용 : 지하수 굴착 - 굴착규모 : 깊이 150m, 관경 150mm - 보호공 설치 규모 : 1*1*1m | 허가 | '23.09.27. |
| (사적) 파주 삼릉 | 경기도 파주시 | ○○○ | <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조성> ○ 위치 :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27-16 외3필지 (3구역/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름) ○ 사업내용 :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조성 - 대지면적 : 3,065㎡ - 건축면적 : 499.6㎡ - 건물규모 : 3동, 지상1층 - 최고높이 : 5.5m - 용벽 : H=0.2~3.9m, L=929.66m ※ 2021.2.22.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| 허가 | '23.10.10. |
| (사적) 고양 서삼릉 | 경기도 고양시 | ○○○ | <수소충전소 부지조성> ○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82 외2필지 (4구역/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름) ○ 사업내용 : 수소충전소 부지조성 - 대지면적 : 2,330㎡ 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: 261㎡) - 설치설비 : 57㎡(냉각기 설치) | 허가 | '23.10.10. |

다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접수 11명